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219호
--------	--------	-------

제출년월일 : 2002. 2.
제출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신설(안 제36조제2항)
-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안 제50조제1항)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당초 매년5월 1일과 매년6월 16일부터 6월 30일 이었으나 매년6월 1일과 매년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조정함(안 제90조)

□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세정13400-2251(2001. 12. 17)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시·군세조례개정내용 송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5조제2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로 한다.

제49조중 “영 제166조”를 “영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중 “환급율”을 “환부률”로 한다.

제90조중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6조(납세의무자) (생략) <u><신설></u></p>	<p>제36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p>제45조(과세표준) ①(생략)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 ②----- ----- ----- ----- -----영 제152조----- ----- ③----- ----- ----- ----- -----영 제153조----- -----</p>

④(생 략)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49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영 제157조-----

②(현행과 같음)

제49조(수시부과)-----

-----영 제156조-----

제50조(신고와납부) ①-----

5

월 31일까지 영 제154조-----

②(현행과 같음)

제61조(가산세) ①(생략)

②(생략)

1. ~ 2(생략)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생략)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도시계획세
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
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 ~6월30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제61조(가산세) 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1. ~ 2(현행과같음)

3.-----
----- 환부를

4.(현행과같음)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	-----	-----